#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2004~ 1 |
|---|---|

| 제출일자 | 2004. 4. |
|---|---|
| 제 출 자 | 거창군수 |

□ 제정사유

○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국제연극제와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 개최 등으로 외국인과 타 지방 유명인사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지만, 이들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정 활용이 전무한 실정임

○ 이에 거창군명예군민증서 수여 사업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군정수행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○ 거창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수여대상을 정함( 2 )

○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( 3 )

○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여대상자에 대한 적격 및 취소여부를 심사하도록 함( 4 )

○ 우호증진을 위하여 거창군을 방문한 외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 8 )

○ 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를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필요시 기념품도 수여 할 수 있도록 함( 9 )

○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함 ( 10 )

□ 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5 :

거창군 조례 제 호

#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

**제1 ( )** 이 조례는 거창군정( " " ) ·|국인 또는 거창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거창군명예군민증서( " "|한다) |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 ( ) 거창군수( " " )** : 거창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 | 해당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1. ,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에 기여한 자
2. · · · ·|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
3.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
4. 우호증진 또는 군의 주요행사를 위해 방문하는 외빈
5.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3 ( )**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 |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.

1. 공공단체의 장
2. 10 ¦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
3. 10 ¦ 이상의 거창군민

②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[ 1 ] |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 ( )** ① 다음 각 호의 1 |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( " " ) .

1.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
2.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 10 .

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

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1. 거창군의회 의원
2. 거창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
3.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.

**제5 ( 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 ( 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 ( 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, 간사는 명예군민증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**제8 ( )**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은 제3 :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 , 2 4 :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9 ( )** ① 제8 :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[ 2 ] .

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 ㅏ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수 있다.

③ 제1 ㅏ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**제10 ( )**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거창군민에 준하

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하거나 거창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[ 3 ] · 치하여야 한다.

**제11 ( )**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 10 :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.

**제12 ( 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 1 ]

#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서

## 1. 인적사항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성 명 | | 국 적 | | | |
| 생년월일 | | 직업 · 지위 | | | |
| 가족관계 | | 사용언어 | | 한 국 어<br>구사정도 | 상 중 하 |
| 연락처 | 주 소 | | | | |
| | 전 화<br>번 호 | | | | |

## 2. 주요경력

## 3. 공적사항( )

## 4. 추천자 연락처( : , : )

년 월 일

**추천자 : ○ ○ ○ ○ 장 ○ ○ ○**

**거창군수 귀하**

※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

[ 2 ]

제 호

## 명 예 군 민 증 서

( )

대한민국 거창군수는 귀하께서 거창군정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온정과 후의에 감사드리며, 거창군민을 대표하여 명예군민증을 드립니다.

년 월 일

**거 창 군 수( )**

##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

As the Mayor of Geochang County and on behalf of it's citizens, in recognition of the warmth and generosity you have shown our county, I have the honor of conferring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ship upon

○ ○ ○ ( ).

( )

( )

**Mayor of Geochang county**

Presented this ○ h day of ○ 20○○ Geochang-county, The Republic of Korea

※ 영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영문을 대상자의 모국어로 표기할 수 있음

[ 3 ]

#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

| 일련번호 | 수여년월일 | 성 명 | 성별 | 생년월일 | 직 업 | 주 소 ( ) | 주요공적사항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